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 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93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: 2018. 6. 15.

발 의 자: 권칠승 · 이찬열 · 박 정  
고용진 · 황주홍 · 황 희  
이춘석 · 신창현 · 이수혁  
신경민 · 위성곤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,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6 조제1항 후단).

법률 제 호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 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후단 중 “구거(溝渠)”를 “도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